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29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4
나. 적용기한 연장(문금주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8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2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19
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25
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35
6.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40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40
나.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기간 확대(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3),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원안(2), 주진우의원안)	45
7.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9
가. 개요	59
나. 지역특구별 의의 및 지정현황	62
다. 지역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최수진의원안(2), 이인선의원안, 이춘석	

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3),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81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서영교의원안) ...	90
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100
10.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03
1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이학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108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등)	113
1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118
14.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130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2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3. 24.

(3) 회 부 일 : 2025. 3. 25.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의4).
-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3조의2).
- 마. 내국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4조)
- 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3).
- 자.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7조).
- 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0조).

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1조).

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4조).

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7조의3).

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8).

너.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9).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¹⁾를 감면하는 것임.

1992년 신설 당시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감면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율]

구 분		지 역 및 업 종	감면율(%)
기업규모	소기업	도매업등(의료업 포함) 업종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2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 업종	5
		수도권 안의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1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15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1)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

야 함.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하며²⁾,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조 3,636억원이며, 소득세 감면규모는 1조 3,130억원이고, 법인세 감면규모는 1조 506억원이었으며, 2025년과 2026년 조세지출 규모는 2조 3,379억원과 2조 4,127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 소기업의 매출액 산정 규모는 세부업종에 따라 15억원~140억원으로 상이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1	4,924	6,029	10,953
2012	6,506	6,323	12,829
2013	6,384	6,256	12,640
2014	6,845	6,967	13,812
2015	9,011	7,079	16,090
2016	9,973	8,670	18,643
2017	10,492	10,111	20,603
2018	11,409	10,805	22,214
2019	10,885	9,535	20,420
2020	10,680	9,879	20,559
2021	9,995	9,534	19,528
2022	12,632	10,858	23,489
2023	13,738	11,598	25,336
2024	13,130	10,506	23,636
2025(전망)	12,975	10,404	23,379
2026(전망)	13,496	10,631	24,127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혜현황을 보면, 활용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본 제도 활용기업 수는 법인과 개인 각각 15만개 및 76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각각 23만개와 116만명으로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기업당 수혜규모는 법인 500만원 내외, 개인은 100만원 초반 수준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수혜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신고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수	150,687	159,784	172,771	189,384	202,191	209,112	218,488	210,282	226,671	231,807
감면액	696,669	759,247	867,029	1,011,138	1,080,514	953,514	987,883	953,354	1,085,758	1,159,784
법인당 수혜규모	4.62	4.75	5.02	5.34	5.34	4.56	4.52	4.53	4.79	5.00
개인 사업자수	765,496	827,485	869,869	925,458	955,667	978,291	949,301	1,054,908	1,087,528	1,096,239
감면액	901,040	997,228	1,049,203	1,140,906	1,088,412	1,067,950	999,473	1,263,184	1,373,832	1,313,035
개인당 수혜규모	1.18	1.21	1.21	1.23	1.14	1.09	1.05	1.20	1.26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p. 44

나. 적용기한 연장(문금주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대상: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 ○ 유형별 공제율: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유형별 공제율: (현행과 같음)	
본점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20	10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20	-	
지방	·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30	15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30	15	
○ 감면 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1인당 5백만원 감소 ○ 적용기한: 2025. 12. 31.			○ 감면 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정일영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문금주의원안) 2030. 12. 31.(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문금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6년 1월 1일(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박용갑의원안)	

* 문금주의원안 2024. 12. 24. 발의(의안번호 6885), 정일영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25), 이만희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81),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박용갑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4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 박용갑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말까지 3년, 문금주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 4년, 이만희의원안과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업체 수는 829만 8,915개로서,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 명으로서 전체 종사자 수 중 80.4%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구 분	2022년 (비중)	2023년 (비중)	증가(증감률)
기업체 수	8,042,726개 (99.9%)	8,298,915개 (99.9%)	256,189개(3.2%)
종사자 수	18,956,294명 (81.0%)	19,117,649명(80.4%)	161,355명(0.9%)
매출액	33,090,291억원 (44.2%)	33,012,545억원 (44.9%)	-77,746억원 (-0.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5. 8.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산업생태계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폐업자수는 2023년 91.1만명으로 2021년 81.9만명 대비 9.2만명 증가하였고,³⁾ 법인 파산 신청건수는 2024

3)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년 1,940개사로 2021년 955개사 대비 약 1,000개사가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와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 결과 본 제도가 법인사업자의 재무성과, 투자, 노동생산성 및 고용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음.⁴⁾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동 제도 수혜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급여액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⁵⁾

둘째, 본 제도로 인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수평적 형평성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 적용 후 수혜기

4)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5)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9%p 인하되었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 격차는 2.1%p까지 확대되었음.

또한,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는 수혜 대상 업종을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사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여부가 상이하여 수평적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⁶⁾.

셋째, 본 제도는 1992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운영 중인 조세감면 제도로서 기업이 이를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조세특례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본 제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분석 결과 일몰 연장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적용 종료 시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4

6)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인선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정 ○ 요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어음결제비율 = 어음결제/총구매금액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기일</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15일 이내</td><td>0.5%</td></tr> <tr> <td>16~30일</td><td>0.3%</td></tr> <tr> <td>31~60일</td><td>0.15%</td></tr> </tbody> </table> ○ 적용기한: <u>2025. 12. 31.</u>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								

* 이인선의의원안 2025. 2. 3. 발의(의안번호 7864),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말 일
몰이 도래하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통상적으로 대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이루어진 거래관계
에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어음을 발행하면 1차 협력사는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고,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다시 어
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협력사 및 2차 협력사
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어음할인을 만큼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상생결제는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
준의 낮은 수수료로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
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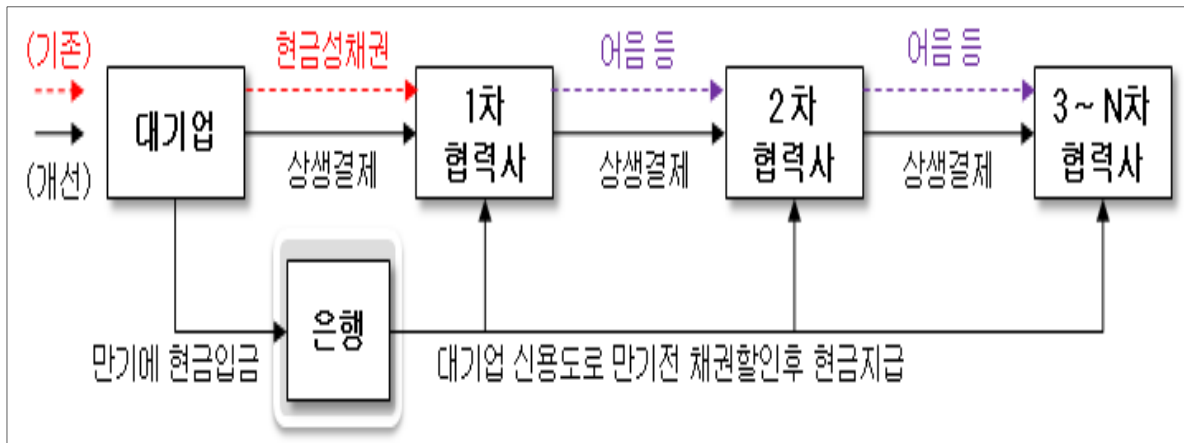
기존에 1차 협력사(판매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자방식의 외상매
출채권 담보대출을 2·3차 협력사에까지 확대하여 2·3차 협력사도
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담보된 1차 협력사의
외상매출채권을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⁷⁾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
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상생결제시스템 기본 구조]



이는 현금, 어음 등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① 신용도가 높은 구매기업(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② 상환청구권⁸⁾이 없는 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연쇄부도 위험을 해소하고, ③ 구매기업 납품대금을 은행의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보관 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위 거래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④ 결제기간이 짧고, ⑤ 매출채권에 어음과 같이 배서(背書)⁹⁾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대금결제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⑥ 만기일 전에도 구매기업 발행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낮은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8)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 행사

9) 배서란 어음의 수취인이나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이를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수표 등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현행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세액공제 제도는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써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에는 중소기업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에는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공제율을 상향하고 그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점차 지원을 강화해왔음.

연도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73개 기업 2조 8,559억원에서 2024년에는 1,016개 기업 21조 6,41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상생결제 이용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중 소	참여기업 수		164	292	367	490	634	778	757	777	778	780
	결제액	당해년도	6,805	22,020	30,063	28,179	18,527	17,386	20,419	23,992	25,619	29,456
		증감률	-	223.6	36.5	△6.3	△34.3	△6.2	17.4	17.5	6.8	15.0
중 견	참여기업 수		109	140	150	171	199	214	219	233	235	236
	결제액	당해년도	21,754	72,420	99,237	114,330	142,453	151,537	178,115	187,056	188,051	186,955
		증감률	-	232.9	37.0	15.2	24.6	6.4	17.5	5.0	0.5	△0.6
합 계	참여기업 수		273	432	517	661	833	992	976	1,010	1,013	1,016
	결제액	당해년도	28,559	94,440	129,300	142,509	160,980	168,923	198,534	211,048	213,670	216,411
		증감률	-	230.7	36.9	10.2	13.0	4.7	17.5	6.3	1.2	1.3

주1: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견기업은 2018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실적을 합산한 값임.

주2: 2024년 기준 중소기업에 따라 분류된 자료임.

자료: 연도별 상생결제 실적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2024년 실적치 기준 약 40억원이고, 조세지출액 규모의 추이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7	0.3	2.2	2.5
2018	1	2.9	3.9
2019	1	7	8
2020	1	7	8
2021	0.9	11	12
2022	0.5	20	21
2023	1	38	39
2024	1	39	40
2025(전망)	1	31	32
2026(전망)	1	32	3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에 따른 유동성 저하,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상생결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금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다만, 세액공제 외에도 상생결제 제도 활용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발주기업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가 면제됨¹¹⁾.

10) 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0.9.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8호)」

I.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액공제가 가장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13조)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 특례: 창업기업, 벤처기업,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출자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 ○ 출자방식: ①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등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 출자방법: -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 -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한도: 납입한 증자대금의 30%) * 코넥스상장기업일 경우 7년 이내 → 2년 이내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출자방식: (현행과 같음) ○ 출자방법: - 안도걸의원안: <u>7년</u> → <u>10년</u>으로 완화 ○ 적용기한: <u>2028. 12. 31.</u>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u>2030. 12. 31.</u> (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2))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1. 31. 발의(의안번호 7850),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회사 등이¹²⁾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직접 또는 벤처펀드¹³⁾를 통해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출자자	방식	대상	법인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직접	①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⑤ 코넥스상장기업	○	○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신기술사업자, ⑤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직접	②, ③, ④, ⑤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X
기금운용법인등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간접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①, ②, ③, ④		

□ 동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해왔음.

한편,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출자대상에 추가하였고,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¹⁴⁾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

14) 참고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차익을 비과세 특례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동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16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까지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6	27	16	15	64	24	41	120	205	65	120	123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벤처투자규모가 2024년 들어 처음으로 반등한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몇년간 투자가 감소했던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게임산업 등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적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9,162	-13,633	+12,338
		증감률	-	+43.9	+24.9	+0.6	+78.4	-11.9	-25.3	+22.9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5,286	4,807	5,425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12.8	11.2	12.2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474	2,309	2,494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7.3	23.7	2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벤처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는 2.4% 증가한 반면, 33,045개 벤처기업은 약 745,800명을 고용해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의 고용증가율은 29.8%를 기록하였음.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창업환경이 선진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의 개선이 기대되고, 벤처기업 등의 특성상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

도가 없어 소수 유망기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여 이미 시장이 성숙했거나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¹⁵⁾

둘째, 안도결의원안과 같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된 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위험도가 높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5)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 대상: -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출자지분(특수관계인 주식·출자지분 제외)을 취득한 내국법인 * 단,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 제외 ○ 공제율: - 직·간접* 출자(제1항):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은 제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제2항):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 Max (①취득가액, ②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액의 60%)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출자방식: 해당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해당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	○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 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직·간접 출자(제1항):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천하람의원안)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15%(안도걸의원안))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제2항):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정부안) 출자금액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15%) + 증가분의 3%(안도걸의원안) ○ 출자방식: 해당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해당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현 행	개정안
입 ○ 적용기한: 2025. 12. 31.	납입(안도걸의원안) ○ 적용기한: 2028. 12. 31.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단, 천하람의원안은 제1항만 연장 2030. 12. 31. (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 (윤준병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천하람의원안)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정부안)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이인선의의원안 2025. 1. 24. 발의(의안번호 7803),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등¹⁶⁾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¹⁷⁾에 신규로 출자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자지분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천하람의원안은 직·간접투자 시 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
되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
우는 공제율 인상 및 일몰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현행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년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에서 5%로 인상하려는 것임.

안도결의원안은 직·간접투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
자 시 기본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15%로 확대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
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문창업투자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기
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규로 취
득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세
액공제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제도임.

동 제도는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2017년부터 신설·시행된 제도로
서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예정임.

또한, 2023년 세법개정 당시 국내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¹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다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음.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 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35	172	260	335	676	652	533	566	578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몇 년간 투자가 감소했던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게임산업 등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적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95호, 2023.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9,162	-13,633	+12,338
		증감률	-	+43.9	+24.9	+0.6	+78.4	-11.9	-25.3	+22.9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5,286	4,807	5,425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12.8	11.2	12.2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474	2,309	2,494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7.3	23.7	2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대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보다 민간 중심의 출자를 통해 창업기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벤처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 증가한 반면, 33,045개 벤처기업은 약 745,800명을 고용해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의 고용증가율은 29.8%를 기록하였음.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창업환경이 선진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 개선, 특히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정부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금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내 벤처펀드 출자현황¹⁹⁾을 보면 상당 기간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의 투자가 2021년 3조 9,955억원에서 2024년 2조 3,15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동 제도의 법인투자자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벤처투자에 있어 동 제도가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²⁰⁾

아울러 적용기한이 과도하게 길 경우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주기도

19) 벤처투자회사·조합 +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통계

20)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25. 9.

함께 길어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 벤처투자·펀드결성 세부현황(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11.3%	
	비중	26.0%	19.1%	18.1%	16.7%	23.0%	-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37.8%
		비중	13.3%	9.8%	8.5%	7.5%	12.8%	-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4.2%
		비중	5.5%	5.0%	5.6%	2.7%	3.8%	-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26.8%
		비중	3.6%	2.3%	2.1%	3.4%	3.1%	-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14.4%
		비중	3.6%	2.1%	1.9%	3.1%	3.2%	-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25.1%	
	비중	74.0%	80.9%	81.9%	83.3%	77.0%	-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23.5%
		비중	8.3%	16.2%	13.1%	11.0%	10.4%	-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5.0%
		비중	18.3%	22.4%	20.7%	20.9%	21.9%	-
	금융기관 (산은 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31.9%
		비중	23.3%	25.2%	27.8%	32.4%	27.2%	-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6.2%
		비중	11.2%	3.8%	7.5%	5.7%	3.1%	-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12.3%
		비중	9.8%	11.5%	10.6%	10.5%	11.4%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11.4%
		비중	3.0%	1.8%	2.1%	2.8%	3.0%	-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 ·펀드결성 10.6조원', 2025. 2. 12.

둘째, 동 제도로 인한 혜택은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특례 수혜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제율 인상과 관련하여 유사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취지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²¹⁾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넷째, 정부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하여 추가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의 취지는 모펀드를 통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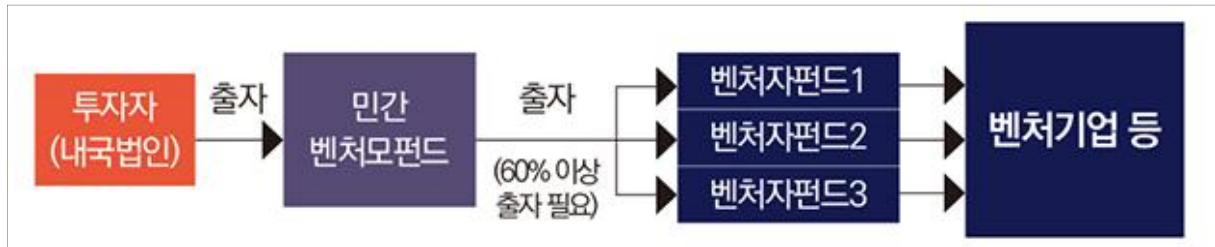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 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 나.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의 특성상 실제 투자대상 기업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공제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동 조세특례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이고²²⁾,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벤처기업 등으로의 자금 유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출을 늘리면서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섯째, 안도결의원안과 같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된 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위험도가 높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여섯째,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 소수 유망기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여 이미 시장이 성숙했거나 과잉 투자가 우려

22)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되는 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²³⁾

문 의 처
02)6788-5154

2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25. 9.

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13조의4)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 ○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특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u>2030. 12. 31.</u> (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공포한 날 (윤준병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2. 12. 발의(의안번호 8080),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 개정안은 벤처캐피탈 등의 모험자본 회사가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특화선도기업²⁴에 신규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 제13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 회사²⁵⁾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었음.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향상, 신제품 개발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 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촉진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임. 특히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될 수 있음.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에 따라 한시법이었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상시법화하였으며 (2020. 4. 시행), 2023년 6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면서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음.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었고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지출 실적은 없는 상황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도입	-	-	-	-	-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동 특례에 따른 투자대상인 특화선도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중, 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분야 기본역량과 향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2025년 4월 기준 총 101개 기업²⁶⁾이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6) 소재분야 35개사, 부품분야 42개사, 장비분야 24개사

(’21년 22개사 → ’22년 21개사 → ’23년 23개사 → ’24년 22개사 → ’25년 13개사)

□ 개정안은 본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 기업 등에게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을 확보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반도체의 생산·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업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⁷⁾.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R&D,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활용 실증평가 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둘째, 본 제도는 한 차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제도 도입 이래

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2025. 4.

조세지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본 조세특례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적용실적이 없어 제도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R&D	▶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 (참고)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변동가능) (1기) 평균 113.7억/3.5년, (2기) 평균 87.5억/3.4년, (3기) 평균 112.2억/3.5년, (4기) 평균 91.2억/3.5년
실증지원	▶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 특례	▶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문 의 처

02)6788-5154

6.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제60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의 결집효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음.

제61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이전(제60조) 및 법인본사이전(제61조)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 분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 (제60조)	법인본사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제61조)
요건	대상법인	대도시 안 공장에서 사업영위 법인 *사업기간 불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 *본사를 둔 기간 불문
	이전요건	대도시→대도시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1년(기존공장 취득) 또는 3년(신규공장 준공) 내 이전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3년 내 이전
	업종요건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이전비율 -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또한, 수도권에 공장 및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제63조) 및 본사(제63조의2)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분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
요건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의 사업영위 기업(법인, 개인)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영위 법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업종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투자 및 고용	해당 없음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
감면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본사 이전 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 * 이전본사 근무인원/법인전체 근무인원
세액감면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성장촉진지역등의 경우 12년간 감면 (10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지역, 지방중규모도시 내의 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10년간 감면(7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중규모도시 등의 경우 7년간 감면 (5년 100%,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한도		없음	

□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2,052억원에서 2024년 79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본사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3,032억원에서 2024년 384억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부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0조)	0.1	1	2	1	1	1
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1조)	2	5	7	5	5	5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63조)	2,052 소득세 (253) 법인세 (1,799)	1,192 소득세 (264) 법인세 (928)	1,279 소득세 (249) 법인세 (1,029)	799 소득세 (195) 법인세 (604)	775 소득세 (141) 법인세 (634)	610 소득세 (16) 법인세 (594)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63조의2)	3,032	2,993	727	384	490	50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이천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0조	공장	대도시 → 대도시 밖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3조	공장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5년간 100% + 2년 50% ¹⁾ 7년간 100% + 3년 50% ²⁾ 10년간 100% + 2년 50% ³⁾
제63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1)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2)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으로 이전

3)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은 제외)으로 이전

☐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의 본사	수도권 →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대도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②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²⁸⁾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²⁹⁾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³⁰⁾

28)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3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나.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기간 확대(윤준병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권영진의의원안, 윤영석 의원안(3),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의원 안(2), 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0조) ○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수도권 밖의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기장군·달성군·군위군, 산업단지 제외)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특례: 공장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강명구의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의원안)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 ○ 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특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현행과 같음) ○ <u>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u>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u>2028. 12. 31.</u> (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 -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①의 금액에 ②와 ③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①) -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②) -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③)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																																				
<table><tr><th></th><th>낙후지역¹</th><th>그 외 지역</th></tr><tr><td>수도권²</td><td>5년 100% +2년 50%</td><td>감면 없음</td></tr><tr><td>수도권 연접지역³</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중규모도시⁴</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7년 100% +3년 50%</td></tr></table>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table><tr><th></th><th>낙후지역</th><th>그 외 지역</th></tr><tr><td>수도권</td><td>5년 100% +3년 50%</td><td>감면 없음</td></tr><tr><td>수도권 연접지역</td><td>5년 100% +3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4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중규모도시</td><td>10년 100% +5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그 외</td><td>10년 100% +5년 50%</td><td>7년 100% +4년 50%</td></tr></table>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7년 100% +2년 50%	7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감면개시기한: 5년→7년(주진우의원안)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u>2028. 12. 31.</u> (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주진우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정부안, 주진우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한병도의원안 2025. 4. 15. 발의(의안번호 9837), 김정재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406), 김형동의원안 2025. 7. 7. 발의(의안번호 11306), 권영진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94), 윤영석의원안 2025. 7. 23. 발의(의안번호 11674), 윤영석의원안 2025. 7. 25. 발의(의안번호 11717), 윤영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69),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1), 강명구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77), 주진우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52), 강명구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2993)

□ 개정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확대하고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정부안)]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낙후지역³¹⁾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개정안은 50%의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 8년간 감면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

3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등 수도권 연접지역 또는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 중규모도시와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혜택이 적용되는데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최초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진우의원안은 본사이전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개시기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10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은 2023년 기준 52.3%로 전국에서 수도권 비중 역시 매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836	516	51,745	515	51,628	514	51,713	515	51,751	515
수도권	26,021	2,193	26,054	2,195	26,053	2,195	26,190	2,206	26,304	2,215

자료: 통계청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명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993	1,046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1.3%	52.1%	52.2%	52.9%	52.8%	52.8%	52.3%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잠정), 2024. 12.

□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감면기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첫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 52.06%(사업체 수 기준), 64.67%(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³²⁾, 2,764개

상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1,103개로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며 경기도(807개)와 인천광역시(96개) 등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약 73%의 상장사가 집중되어 있음.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각종 특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동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기업들의 높은 사전 인지도(본사 78.0%, 공장 65.4%)하에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이전 결정에 기여(본사 46.4%, 공장 51.5%)한 것으로 분석되었고³³⁾, 기업성과(투자, 고용 및 생산성 증대)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사 이전 특례는 기업의 투자 개선, 공장 이전 특례는 생산과 투자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³⁴⁾

또한, 조세감면 혜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고용이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세특례가 전체적으로 지역 고용을 증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³⁵⁾

32) 통계청, 'KOSIS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33)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34)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35)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다른 유사 조사특례 제도 대비 가장 장기간의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감면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각종 지역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위기지역(7년)을 제외하면 최대 5년까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지역특구 감면제도 개요]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2025년 6월말 기준 해당지역 없음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투자진 흥지구, 평화경제특구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고용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시설사업·케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12의2)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2년 50%

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 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청소년수련시설사업 · 교 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둘째, 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감면 기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³⁶⁾

36)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 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도입된 제도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³⁷⁾된다는 점에서 적용 배제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효과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수혜기업 1,584개 중 이전한 공장의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³⁸⁾ 경기도(1,116개)로 이전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206개), 충청남도(85개), 충청북도(56개) 순서로 나타나 수도권 인근으로 공장 이전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³⁹⁾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37)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38) 단,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본사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함.

3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지역별 공장 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 수]

(단위: 개)

지역	합계	수혜기업 수		
		법인의 공장 이전	중소기업 수도권 안	중소기업 수도권 밖
강원도	22	10	1	11
경기도	1,116	75	840	201
경상남도	4	1	0	3
경상북도	10	3	0	7
광주광역시	4	1	1	2
대구광역시	3	2	0	1
대전광역시	12	3	4	5
부산광역시	2	1	1	0
서울특별시	17	15	2	0
세종특별자치시	5	2	2	1
울산광역시	6	3	0	3
인천광역시	206	16	157	33
전라남도	12	2	1	9
전라북도	13	4	2	7
제주특별자치도	3	1	1	1
충청남도	50	2	4	44
충청북도	56	7	4	45
전체	1,584	206	1,012	366

주: 2016년~2023년의 기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7.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 개요

□ 각 개정안은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역특구 내 창업·투자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 지역특구 산업의 발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는 각 특구의 근거법률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 되었으며,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

[지역특구 감면제도 개요]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2025년 6월말 기준 해당지역 없음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투자진 흥지구, 평화경제특구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고용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 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 시설사업·케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 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입주기업(§12의2)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121의9)	제조업 : 1천만달러 이상 + 1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5백만달러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 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청소년수련시설사업 · 교 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현행 지역특구 등에 대한 조세지출실적은 연구개발특구와 위기지
역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
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

[지역특구 등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구개발특구	33	40	53	31	106	52	116	114	75	157	160
위기지역	-	-	신설	15	100	214	280	411	468	438	45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5	4	0.3	0.7	0.7	1	1	1	0.6	0.9	0.9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23	21	8	5	0.5	1	6	0	0.02	0	0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56	75	65	26	56	8	49	72	36	57	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	-	-	0.3	1.1	0.1	1	0.7	0.5	0.3	0.3
금융중심지	-	0.01	-	-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0.17	0.15	0.03	1.2	9	11	24	7	5	4	4

주: 2025년 및 2026년은 전망치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및 기획재정부 자료

나. 지역특구별 의의 및 지정현황

□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⁴⁰⁾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5개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14개 거점별 강소특구를 의미함.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2011년 광주특구·대구특구, 2012년 부산특구, 2015년 전북특구로 확대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강소특구⁴¹⁾로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2025년 현재 총 14개에 달함.

2022년말 기준 연구기관 149개, 비연구기관 151개, 기업 10,348개 등 총 10,648개 기관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었는데, 2023년말 기준 연구기관 199개, 비연구기관 202개, 기업 14,594개 등 총 14,995개 기관으로 입주기관 수가 전년대비 약 41% 증가하였음.

4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41) 지정현황: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인천, 강원(춘천)

[연구개발특구 입주 현황]

(단위: 개)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합계
연구기관	49	26	18	29	24	53	199
非연구기관	62	40	19	22	21	38	202
기업	2,803	2,641	1,053	3,376	799	3,922	14,594
합계	2,914	2,707	1,090	3,427	844	4,013	14,995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 지정 현황]

2019년 지정						2020년 지정						2022년 지정	
경기	경남	경남	경남	경북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울산	서울	충남	인천	강원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천안	아산	서구
												춘천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현행법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등록한 첨단기술기업⁴²⁾ 및 연구소기업⁴³⁾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 개시 기준 3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후 2년 동안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음.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의 합계인데, 청년 상시근로자⁴⁴⁾와 서비스업을 하는

42) 특구 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43)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하여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44)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임.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당 감면한도 2,000만원이 적용됨.

[연구개발특구 지정혜택 및 제한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발지원	① 실시계획 승인으로 30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② 특구개발사업(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수용 ③ 특구개발사업 추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부 심의 필요)
개발관련 규제완화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및 층수 완화 ② GB해제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완화(15% 이내)
부담금 감면	① 개발사업시행자에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등 ②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건축행위 규제	① 특구 토지용도 구역별 지정된 건축물이외의 건축 제한 ②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 (연면적 5천㎡ 또는 16층 이상)
입주계약 (업종제한 등)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및 산업시설구역, 입주 시 계약 필요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부지 양도가격 제한 ③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 제한(특구관리계획 별지4)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① 특구법 제9조 등에 따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설립
각종 지원사업 우대	①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중기부), 신진여성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과기부) 등 ② 각종 특구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세제 혜택	① (국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단, 지방세 혜택은 특구가 소재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의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됨.

고용위기지역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고⁴⁵⁾, 고용재난지역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임.⁴⁶⁾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⁴⁷⁾

2025년 9월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

45)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 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46)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47)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정된 곳이 없고,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지정사례가 없음.

참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경우 2025년 5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 2025년 8월 28일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신규지정되었음⁴⁸⁾.

[위기지역 등 지정 현황]

구분	위기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정지역	- * 기존 지정지역(경남 거제)은 '24. 6. 30.로 지정만료	-	- * 기존 지정지역(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은 '23. 5. 28 자로 지정만료	전남 여수 ('25. 5. 1. ~ '27. 4. 30.) 충남 서산 ('25. 8. 28. ~ '27. 8. 27.) 경북 포항 ('25. 8. 28. ~ '27. 8. 27.)
지정기간	2년 * 1년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	2년(최대5년) *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년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위기지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전라남도 여수시·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 8. 28. ~ 2026. 2. 27.)’이 포함된다고 해석됨. 다만, 기획재정부는 위기지역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필요시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러한 위기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경우 중

48) 2025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2년)

견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감소액의 10%와 임금보전액⁴⁹⁾의 15%를 합한 상당액을 세액에서 감면함⁵⁰⁾.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수도권 밖 광역시 내 위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일반적인 수도권 밖 소재 광역시(7년)에 비해 오랜 기간(10년) 세액감면을 적용하며⁵¹⁾,

49) 임금보전액: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최초 5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함⁵²⁾).

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5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 제121조의8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2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현황]

구 분	세부내용
1단지	○ 목적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정보통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 위치/면적 : 제주시 아라동 일원 / 1,098천㎡(약 33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2005년~2025년 / 9,070억원 ○ 주요 유치업종 : IT·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2단지	○ 목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IT, BT, CT, ET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위치/면적 : 제주시 월평동 일원 / 848천㎡(약 26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 2016~2028년(예정) / 3,921억원 ○ 주요 유치 업종 : IT·BT·CT·ET·ST 관련 기업, 연구소 등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현황]

업종	기업수	비율	주요기업
IT	110	58%	카카오(코스피), 이스트소프트(코스닥)
BT	44	23%	덴티움(코스닥), 대봉엘에스(코스닥), 제주개발공사(지방공기업)
ET 등 기타	36	19%	한국에너지종합기술, 제주산학융합원, 제주지역사업진흥원
합계	190	100%	

주: 2024년 12월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법 제121조의9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⁵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2025년 현재 45개 기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협소한 배후시장, 높은 물류비용, 취약한 산업인프라 등으로 우수기업 유치 및 투자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형과 단지형으로 나누어져 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및 대상업종]

구 분	세부내용
개별형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대상업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 (외국)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 첨단산업, 식료품·음료 제조, 화장품제조 등과 이에 관한 연구개발업 ○ 신청기한: 공사 착수일 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자: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투자금액(내·외국인 투자자 동일 적용) - 관광관련 사업 : 미화 2천만불 이상 신설투자 - 그 밖의 사업 : 미화 5백만불 이상 신설투자
단지형 (투자유치 지역)	○ 대상지역: 유원지 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 ○ 대상업종: 개별형과 동일 ○ 개발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법인 ○ 총 투자액: 1천억원 이상

자료: 제주도청

5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⁵⁵⁾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현재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포 후 정부에서는 6개 시범사업을 선정(2005년 7~8월)하였으며, 현재는 4개 지역에서 기업도시 개발 중임.

[기업도시 추진현황]

구분	면적 (만㎡)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기업유치
충주	701	'07-'12	6,352	준공('12), 분양률 100%	23개사 유치
원주	529	'08-'19	10,425	준공('19), 분양률 100%	50개사 유치
태안	1,546	'07-'25	1조 2,982	공정률 61%, 골프장 4개소 운영 중, 콘도 및 화훼보전화센터 등 운영	골프장 4개소, 콘도 등 유치
영암/ 해남	3,379	'06-'30	3조 2,611	3개 지구로 개발 (구성지구 착공 '13.1, 삼호지구 착공 '14.6, 삼포지구 1단계 F1 경기장 사용 등)	골프장 4개소, 등 태양광발전소 등 유치

자료: 기획재정부

[기업도시 입주, 투자, 고용현황]

구 분	입주현황	투자현황	일자리 창출
충주기업도시	23개사 가동	1조 5,687억원	4,214여명 고용
원주기업도시	35개사 가동	9,281억원	4,232여명 고용
태안기업도시	10개사 가동 1개사 공사중	2,534억원	760여명 고용
영암·해남 기업도시	1개사 가동 3개사 공사중	4,473억원	183명 고용

자료: 기획재정부

5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한편, 법 제121조의17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⁵⁶⁾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및 인근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고,

지역활성화지역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2025년 현재 전국 22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⁵⁷⁾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새롭게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임.

5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7) 강원(양양군, 태백시), 충북(단양군, 영동군), 충남(청양군, 태안군), 전북(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북(군위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경남(산청군, 의령군, 함천군)

[낙후지역 지정현황]

구 분	지정현황
성장촉진지역	○ 의의: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기반시설 구축 등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25년 기준 70개 시·군 지정 ※ 강원(삼척시, 횡성군 등 8개), 충북(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충남(보령시, 금산군 등 6개), 전북(정읍시, 장수군 등 9개), 전남(강진군, 해남군 등 14개), 경북(문경시, 영덕군 등 15개), 경남(밀양시, 거창군 등 11개), 대구(군위군 1개)
접경지역	○ 의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 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 지정현황: '25년 기준 15개 시·군이 지정 ※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개발대상섬	○ 의의: 여건이 열악한 도서(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대상 도서를 지정 ○ 지정현황: '25년 현재 전국 371개* 도서가 지정 ※ 인천 32개, 경기 4개, 충남 24개, 전북 23개, 전남 215개, 경북 2개, 경남 63개, 제주 8개
새만금사업지역	○ 의의: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한편, 여수해양박람회특구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⁵⁸⁾에 따라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후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전시·체험시설 9개를 비롯한 총 33개 기업이 입주해있음.

5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법 제121조의20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59)에 따라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자 지정된 지역으로서 광주광역시에 3개 권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구 분	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라마다충장호텔권역
신청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킴보주식회사
지정일	2010.12.9. (최초) 2020.4.14. (확대)	2010.12.9. (최초) 2020.4.13. (확대)	2020.8.7.
대상지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남구 송암로 61 일원 (CGI센터 주변)	동구 호남동 23-2
면 적	282,433 → 1,947,245㎡	15,536 → 37,100㎡	9,864㎡
주요업종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파생되는 전시 및 공연, 관광숙박업 등	VR, 방송, 영상, VFX 등	관광호텔
입주기업 (387개) (‘24년 기준)	355	31	1
고용현황 (2,368명) (‘24년 기준)	1,864명	439명	65명

자료: 기획재정부

5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법 제121조의21에 따른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⁶⁰⁾에 따라 지정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의미하며,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36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음.

60)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금융중심지(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규 모	비 고
1단계 (29개 3,525명)	이전 공공기관 (5개 2,642명)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층(3,40~47)	15.1.15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	8개 층(7,12~13, 23~27)	14.12.17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	8개 층(6,10,11,15~19)	14.12.23 이전
		한국예탁결제원	7개 층(5,36~39, 54, 63)	14.12.5 이전
		한국남부발전	7개 층(4,30~35)	14.10.22 이전
	해양금융 전문기관 (3개 95명)	해양금융종합센터	3개 층(20~22)	14.9 신설
		캠코선박운용(주)	1개 층(53)	15.4.이전
		아시아 태평양 해사 중재센터	1개 층(52)	18.4 이전
	국제기구 (1개 10명)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훈련기관(FATF TRAIN)	1개 층(53)	16.9 신설 20.4 명칭변경
	D-Space BIFC (3개 5명)	한국씨티은행	1개 층(63)	21.7 입주
		UIB 손해보험	1개 층(63)	23.11 입주
		Linaone	1개 층(63)	23.11 입주
	블록체인 기업 (3개(35개사) 120명)	b-space	2개 층(21~22)	22.3.24. 신설
		기술혁신지원센터	1개 층(8)	22.12.7. 신설
		역외기업 육성센터	1개 층(9)	23.4.입주
	기 타 (6개 70명)	부산국제 금융진흥원	1개 층(52)	20.7 신설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1개 층(52)	15.9 이전
		국제금융연수원	1개 층(52)	14.9.26 신설
		코스콤부산센터	1개 층(52)	15.10.신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개 층(9)	18.11.30 이전
		KRX·IBK창공	1개 층(55)	19.6 신설
	지역 금융기관 (8개 583명)	한국거래소	10개 층(50~51,55~62)	14.12.23 이전
		신용보증기금(지점)	1개 층(14)	14.12.16 이전
		한국증권금융(지점)	1개 층(9)	14.11.10 이전
		우리은행(지점)	2층	14.10.13 신설
		국민은행(지점)	1층	14.11.28 신설
		NH금융플러스센터(은행·보험·증권)	2층	14.10.13 신설
		부산은행(지점)	9층	14.11.4 신설
		신한은행	52층	14.11.25 신설
개 별 (3개 1,406명)	지역 금융기관 (3개 1,406명)	기술보증기금	지하2, 지상15	11.6 이전
		한국은행부산본부	지하1, 지상4	13.7.22 이전
		부산은행 본점	지하3, 지상23	14.11.4 이전
2단계 (4개, 638명)	이전 공공기관 (1개, 169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 스페이스	4개 층(7~10)	19.9 확장
	R&D 센터 (1개 120명)	삼성중공업 R&D 센터	2개 층(16~17)	23.12.11. 개소
	핀테크 기업 (344명)	U-Space BIFC	5개 층(11~15)	19.10.14. 개소
	기타(1개, 5명)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1개 층(11)	15.10.신설/ 20.5 이전

자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법 제121조의22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⁶¹⁾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현재 대구경북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첨단 의료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이후 200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2009년 8월 대구경북 신서지구(102만㎡)와 충북 오송지구(113만㎡) 등 2곳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었음.

대구경북은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를, 충북 오송은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를 특화분야로 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

(단위: 천㎡, %)

지역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계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 구역	
충북 오송	1,131.1 (100.0)	768.1 (67.9)	520 (46)	116.7 (12.1)	20.1 (2.6)	111.3 (9.8)	363 (32.1)
대구 경북	1,054.0 (100.0)	466.1 (44.2)	316.9 (30.1)	99.1 (9.4)	23.4 (2.2)	26.7 (2.5)	587.9 (55.8)

자료: 보건복지부

6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상세현황]

단지	구 분	총 계	토지분양 업체수		연구실분양 업체수		임대 업체수	
			전체	분야별	전체	분야별	전체	분야별
대구 경북 (신서)	소계	93	43	-	31	-	19	-
	기업체	76	31	의약품 8 의료기기 23	31	의약품 4 의료기기 27	14	의약품 6 의료기기 8
	기 타	17	12	-	-	-	5	소속기관 1 공공기관 3 기타 162)
충북 (오송)	소계	132	73	-	-	-	59	-
	기업체	115	56	의약품 29 의료기기 18 화장품 1 의료기술 8	해당 없음		59	의약품 26 의료기기 9 의료기술 24
	기 타	17	17	-	"		-	

자료: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다양한 규제 특례⁶³⁾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실증평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 제121조의22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⁶⁴⁾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 발생 이후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

62)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경북대병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전자정 보기사사업단

63) 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연장(2년 → 5년), 단지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

6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년간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가 적용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지 내 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조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함.

-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진흥법」⁶⁵⁾에 따른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산업단지를 의미함.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 현황]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합 계	2,321,928.7	100.0
산업시설용지	1,483,324.6	63.9
제 조시설용지	1,366,994.4	58.9
연구시설용지	30,838.1	1.3
물류시설용지	85,492.1	3.7
복합시설용지	69,767.0	3.0
지원시설용지	30,369.5	1.3
상업용지	28,353.7	1.2
주거용지	77,528.3	3.3
기반시설용지	632,585.6	27.3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하고 있고, 2025년 3월말 기준 토지 분양기업 128개사와 식품벤처센터(임대공간) 입주기업 34개사 등 총 162개사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이며 투자유치 성과

65)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및 분양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성과]

(단위: 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투자유치	6	24	50	69	89	96	114	126	125	129	128
고용창출					581	810	1,044	1,416	1,628	자료없음	
분양률	7.2	18.9	27.9	34.5	40.9	49.0	65.2	72.4	73.7	74.5	74.0

주) 2025년 3월말 기준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현행법령⁶⁶⁾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예정)기업 162개사 모두 조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함.

6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다. 지역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최수진의원안(2), 이인선의원안, 이춘석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3),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현행			개정안	
○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 특구 내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조문	특구	감면율		
제99조의9	위기지역	5년 100% +2년 50%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3년 100% +2년 50% (사업실행자는 3년 50% +2년 25%)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현 행	개정안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근로자, 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① 위기지역: <u>2025. 12. 31.</u> ② 연구개발특구: <u>2025. 12. 31.</u> 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u>2025. 12. 31.</u>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u>2025. 12. 31.</u> ⑤ 제주자유무역지역: 2021. 12. 31. ⑥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u>2025. 12. 31.</u>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u>2025. 12. 31.</u>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① 위기지역: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② 연구개발특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 (최수진의원안, 황정아의원안) <u>2031. 12. 31.</u> (이인선의원안) 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정부안)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정부안) 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⑥ 공여구역주변지역: <u>2030. 12. 31.</u> (김성원의원안)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정부안) <u>2031. 12. 31.</u>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⑧ 금융중심지: 2025. 12. 31.	⑧ 금융중심지: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2025. 12. 31.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이만희의원안) 2030. 12. 31. (최수진의원안)
⑩ 국가식품클러스터: 2025. 12. 31.	⑪ 국가식품클러스터: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이춘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이만희의원안) 2030. 12. 31. (한병도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최수진의원안(2), 이인선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추경호의원안(3), 황정아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이춘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최수진의원안 2025. 1. 31. 발의(의안번호 7849), 최수진의원안 2025. 2. 3. 발의(의안번호 7863), 이인선의원안 2025. 2. 11. 발의(의안번호 8061), 이춘석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29), 한병도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45), 이만희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07),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김성원의원안 2025. 4. 10. 발의(의안번호 9694), 추경호의원안 2025. 7. 30. 발의(의안번호 11861), 추경호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0),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54), 안도걸의원안 2025. 10. 1. 발의(의안번호 13402)

□ 각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연구개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지역산업의 위기 완화,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 각 지역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의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감면한도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구 입주기업의 고용유인이 증가되어 지역특구 지역의 청년 등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지역특구 지역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청년고용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청년고용이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1분기 지역별 청년고용률 현황]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8.2	43.8	38.0	46.0	37.2	44.6	41.5	34.6	47.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5.0	47.4	47.2	37.5	40.5	40.0	35.8	40.8	4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2005년 말 기준 23,558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28,630명으로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라북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매년 고용창출 성과가 증가하고 있음⁶⁷⁾.

□ 다만,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각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각 특구의 소관 부처에서 특구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고 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올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67) 고용창출: ('19) 581명 → ('20) 810명 → ('21) 1,044명 → ('22) 1,416명 → ('23) 1,628명

[2025년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주요 지원사업]

구 분	사업명			형 태	예산 (백만원)	지 원 내 용
광역 특구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간접	5,250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 등
		기술평가 지원		간접	700	연구소기업 설립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창업 스튜디오		간접	900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연구성과 사업화	일반	직접	7,275	기술사업화
			유니콘	직접	3,750	기술사업화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이노폴리스 캠퍼스		간접	2,400	법률, 재무 등 애로해결 및 투자 연계, 멘토링 등 초기 성장
		실증 스케일업		직접	10,086	지역 내 기술·제품 실증
	글로벌 부스트업	협력거점 기반 PoC		간접	3,000	해외 PoC 및 인증
		글로벌 클러스터 R&BD		직접	2,000	국제 공동 R&BD
소 계					35,361	-
강소 특구	공통수단 지원	기술이전 R&BD		직접	8,750	R&BD(제품화·양산화)
		전략기술 연계 R&BD		직접	3,400	전략기술/딥테크기술 기술사업화
		글로벌 협력 지원		간접	760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특화수단 지원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간접	3,820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
		이노폴리스 캠퍼스		간접	3,865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혁신 네트워크 운영		간접	2,445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역 특성화 육성		간접	6,420	기업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간접	5,100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
		이노테크 기업 육성		간접	10,300	지역주도형 특화분야 기업 스케일업
소 계					44,860	-
합 계					80,221	-

※ 직접: 기업에게 출연금을 지급 사업 수행 지원 / 간접: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목적별 기업 지원

※ 2025년 신규과제에 한함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행정안전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한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정비, 도로 개설 등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총 6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
행 중임.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약 600억원, 2025년에는 약 470억원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복합단지 내 융복합 동물실험

험 연구동 등 시설 건립, 노후 연구장비 교체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구기술지원, 규제지원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특례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약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식품기업 및 연구소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투자설명회 개최,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벤처창업 육성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⁸⁾.

둘째, 일부 특구의 경우 입주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세감면 규모 역시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고,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제도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도입 이후 계속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해 온 본 조세특례의 정책목표가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23년말 기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은 14,995개로, 2005년말 기준 752개 대비 약 19.9배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약 81조원으로 2005년말 대비 31.7배 증가하였음.

특히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의 경우 누적 설립기업 총

68) 최근 5년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단위: 백만원).
(’21) 45,320 → (’22) 35,842 → (’23) 37,532 → (’24) 27,430 → (’25) 24,147

2,064개 중 1,339개 기업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첨단기술기업은 총 261개 기업이 누적 지정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은 85개임⁶⁹⁾.

[연구소기업 등록 현황(누적)]

(단위: 개)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합계
2023년	484	231	263	237	221	375	1,811
2024년	518	249	286	258	244	485	2,040
증감	+34	+18	+23	+21	+23	+110	+229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누적)]

(단위: 개)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합계
2023년	139	31	20	15	24	18	247
2024년	144	31	20	17	26	23	261
증감	+5	-	-	+2	+2	+5	+14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셋째,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구도 상당수 있는 바, 이 경우 세액감면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의 경우 조세지원 실적이 미비하거나 전무하여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9) 연구소기업: 2025년 3월 말 기준, 첨단기술기업: 2024년 12월 말 기준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이만희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서영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 감면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감면율: 5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납부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농공단지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 적용기한: ① 농공단지: <u>2025. 12. 31.</u> 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① 농공단지: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이만희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강명구의원안) 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이만희의원안, 추경

현 행	개정안
	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강명구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만희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3),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김형동의원안 2025. 7. 3. 발의(의안번호 11236), 윤영석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7),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강명구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5), 서영교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54)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하고⁷⁰⁾,

70)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산업의 낙후·쇠퇴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판매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의미함⁷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7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

[농공단지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농공단지 수	입주업체 수	가동업체 수	총 고용인원
2017년	468	7,162	6,410	150,042
2018년	472	7,321	6,549	149,128
2019년	472	7,486	6,730	152,612
2020년	472	7,679	6,924	153,253
2021년	476	7,892	7,173	154,450
2022년	476	8,100	7,429	154,125
2023년	481	8,286	7,535	152,012
2024년	484	8,369	7,674	153,39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연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현황]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하남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진곡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평동1,2차 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평동3차 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주포제2농공단지	2023.12.30.~2025.12.29.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4-6호

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동화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삼계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동화전자 종합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금사공업지역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1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2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3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4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나주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나주혁신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강진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세풍일반 산업단지(1단계)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주: 음영표시된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세지원 지역(인구 20만 미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 하에 1986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음.

동 조세특례는 신설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없었으나, 1998년 세법개정 시 2000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9차례에 걸쳐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도래 예정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3	11	5	4	2	0.1	0.1
법인세	30	39	49	46	98	96	98
합계	44	50	54	50	100	96	98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농공단지의 69.7%가 착공 후 20년이 지나 노후되었으며 지원 인프라 부족 등 경쟁력의 지속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85년 이전	86~ 90년	91~ 95년	96~ 00년	01~ 05년	06~ 10년	11~ 15년	16~ 20년	21년 이후	합계
개수	8	209	58	19	43	84	46	7	10	484
비율	1.7	43.2	12.0	3.9	8.9	17.4	9.5	1.4	2.1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의 운영을 통해 2024년 평균 분양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하고, 입주기업 수도 12.9%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이 50.2%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또는 증감률) '23년 대비 '24
분양률	88.5	89.7	1.2
입주기업 수	792	894	12.9
생산액	23,968	35,996	50.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둘째, 농·어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소득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고용되는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어가소득 역시 65%~82% 수준에 불과함.

[농 · 어가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6%	60,033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1
2019년	41,182	59.3%	48,415	69.7%	69,432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0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5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4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3

주1: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 소득을 말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을 말함

주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17년부터 4개 분기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기재함

자료: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외에도 각종 혜택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주 검상농공단지, 김제 서흥농공단지, 영천 도남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친환경 인프라를 설치하였고, 군산 서수농공단지, 김제 서흥농공단지,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공단지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였음.

또한, 여러 부처에서 농공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2,180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입주기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등 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둘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재정사업이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 앞서 나열한 재정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는바 세제지원 외에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직접 생산 물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긴급경영안정자금·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지원 시 평가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가 적용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주요 지원현황]

구 분	세부내용
판로지원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자금지원	특별지원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 시 우대지원
기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금지원 한도 확대, 분양조건 완화 등 추가지원

자료: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20. 8. 17.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 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8) ○ 요건 -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과세특례 - 내국법인: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5년 후 5년간 법인세 익금 산입 - 거주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동안 분할 납부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56)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르면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②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5년 거치 후 익금을 5년간 분할산입할 수 있고, 거주자는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할 수 있음.

동 조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1년 약 1,000만원에서 2022년 1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계속해서 1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0.3	0.2	0.1	1	1	1	1	1

주: 2025년, 2026년도는 전망치임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동 조세특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의 과밀화·복잡화로 인한 환경문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위축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0.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해당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인 소유 주식·출자지분 매입 취득제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조합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이인선의원안 2025. 2. 13. 발의(의안번호 제8117호),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제9294호),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제11544호),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제12052호),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5건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예정인 창업기업 등에

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5년(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①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③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조합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구체적으로는, ①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⁷²⁾하여 벤처기업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라) K-OTC⁷³⁾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 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식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②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는, (가) 벤처투자조합이

72) 창업 5년 이내 및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에 한정하며,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자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이어야 함.

73)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의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마)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매)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합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③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합이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2024년 감면 실적은 53억원이고, 2025년과 2026년은 각각 60억원, 6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 (전망)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3	53	60	66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후 그 주식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위축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둘째, 벤처기업 중 51.0%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⁷⁴⁾이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통해서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적 필요성·타당성이 있고,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동 과세특례가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동 과세특

74)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 36,959개를 대상으로 2024년 실시한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51.0%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조달 규모는 1,720만원 수준임. 신규자금은 주로 민간금융 기관대출(28.8%), 정책금융 기관지원(24.1%)을 통해 조달함.(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p.51·53)

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⁷⁵⁾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각각 3년과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75)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창업자 등예외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 p. 167~169.

1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이학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의3 제1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td><td>40%</td></tr> <tr> <td>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td><td>25%</td></tr> </tbody> </table>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등의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의3제2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td><td>40%</td></tr> <tr> <td>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td><td>25%</td></tr> </tbody> </table>	구 분	감면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40%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25%	구 분	감면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25%	○ 적용기한 연장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7년 12월 31일까지(이학영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까지(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까지(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u> ○ 적용기한 연장 (현행과 같음)
구 분	감면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40%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25%												
구 분	감면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25%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7년 12월 31일까지(이학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까지(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까지(이인선의원안)

* 이학영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900),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이인선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1), 추경호의원안 2025. 8. 4. 발의(의안번호 11950),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56), 안도걸의원안 2025. 10. 22. 발의(의안번호 1367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7건의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에 대해 동법 제17조⁷⁶⁾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동법 제20조⁷⁷⁾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년(이학영의원안), 3년(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5년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7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년(이학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3년(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5년 연장(이인선의원안)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협의매수(협의매수·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 ① 개발제한구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하고, ②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하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하고 있음⁷⁸⁾.

- 2024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은 154억원이며, 2025년과 2026년 감면예상액은 각각

7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이하 생략)

109억원, 118억원으로 전망됨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감면액	112	167	192	154	109	118

*2025년 및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제도에 비하여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규제는 그 자체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은 일반적으로 지가 등이 그 외 토지 등에 비하여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필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이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둘째, 동 조세특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긍정적인 점이 있고, 동 조세 특례의 연장을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2022년 정기회에서 동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등)

현행	개정안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저율 분리과세 특례(제27조) ○ 적용대상: 거주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제외)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14%) ○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u>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u>	○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u> - <u>2028년 12월 31일(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u>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이인선의원안 2025. 5. 12. 발의(의안번호 1046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분리과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연장기간별로 3년 연장하는 안(정부안)과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정부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정 이후 30년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146조원 규모의 853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해왔음.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 여

건은 악화되고 세수 감소와 복지 분야 등 지출 수요 확대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요청되는 상황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인프라펀드’라고 함)는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⁷⁹⁾.

인프라펀드는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구분되는데⁸⁰⁾⁸¹⁾ 현재 「민간투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452개의 인프라펀드 대부분이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드로 운용(평균 800억원 수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7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80)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크게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구분되며, 이 중 “사모펀드”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私募)방식으로 발행(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발행)하고 투자자 수가 100인 이하(일반투자자 총수는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함.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인프라펀드 운용 현황(2024.12.10. 기준)]

구분	합계	민간투자법 근거	자본시장법 근거
합계	452개(40.7조원)	10개(6.2조원)	442개(34.6조원)
공모펀드*	2개(3.7조원)	2개(3.7조원)	-
사모펀드	450개(37.0조원)	8개(2.4조원)	442개(34.6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 공모 인프라펀드는 1개(맥쿼리한국인프라)였으나, KB발해인프라가 공모로 전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2024.11.)에 따라 2개가 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는 개인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14%) 하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후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유인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인프라펀드 대부분이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드로 운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동 세제혜택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투자에 대하여만 적용함으로써 소수 투자자(사모) 중심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공모 방식의 확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년 동 조세특례 도입 이후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자회사의 순자산총액은 2020년 2조 1,171억원 규모에서 2024년 3조 4,142억원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종래 사모 인프라펀드였던 'KB발해인프라투자회사'는 2024년 말
 상장(24.11.29.)하여 현재 공모 인프라펀드는 2개사로 확대되었음.

[공모 투자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 현황]

(단위: 억원, 각 연도 말 기준)

펀드명	설립일	2020	2021	2022	2023	2024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자회사	'02.12.12 ('06.3.15 상장)	21,171	25,335	25,410	29,119	34,142
KB발해 인프라투자회사	'06.1.24 ('24.11.29 상장)	-	-	-	-	8,811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해당 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상의 자본총계를 기재

** KB발해인프라투자회사는 상장시점('24.11.29) 이후의 자본총계만 기재

둘째, 이와 같은 개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사회기
 반시설 공급 등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여 국민의 재산증식과 경
 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경우 이전
 보다 세제상 유리 점이 높아진 상장법인으로 고액 투자자들의 이
 탈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본공급 기능
 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1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 ◦ 벤처기업 등에 투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 창업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 공제율 :		○ 벤처기업 등 직·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 공제내용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이재관의원안)																																			
<table><tr><th colspan="2">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3">직접투자</td><td>3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3천만원~5천만원</td><td>70%</td></tr><tr><td>5천만원 초과분</td><td>30%</td></tr><tr><td colspan="2">간접투자</td><td>10%</td></tr></table>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10%	<table><tr><th>본점 위치</th><th>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6">직접투자</td><td rowspan="3">수도권 외 지역</td><td>7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7천만원~1.5억원</td><td>70%</td></tr><tr><td>1.5억원초과분</td><td>30%</td></tr><tr><td rowspan="3">수도권</td><td>5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5천만원~1억원</td><td>70%</td></tr><tr><td>1억원초과분</td><td>30%</td></tr><tr><td colspan="2">간접투자</td><td>30%</td></tr></table>		본점 위치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수도권 외 지역	7천만원 이하분	100%	7천만원~1.5억원	70%	1.5억원초과분	30%	수도권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초과분	30%	간접투자		3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10%																																			
본점 위치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수도권 외 지역	7천만원 이하분	100%																																		
		7천만원~1.5억원	70%																																		
		1.5억원초과분	30%																																		
	수도권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초과분	30%																																		
간접투자		30%																																			

현행	개정안																												
	(천하람의원안) <table><tr><th colspan="2">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3">직접투자</td><td>5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5천만원~1억원</td><td>70%</td></tr><tr><td>1억원 초과분</td><td>30%</td></tr><tr><td colspan="2">간접투자</td><td>20%</td></tr></table> (안도걸의원안) <table><tr><th colspan="2">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3">직접투자</td><td>5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5천만원~1억원</td><td>70%</td></tr><tr><td>1억원 초과분</td><td>30%</td></tr><tr><td rowspan="2">간접투자</td><td>2억원 이하분</td><td>15%</td></tr><tr><td>2억원 초과분</td><td>10%</td></tr></table> ○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제132조의2제3호) - 간접투자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을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 포함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분	1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분	10%																											
	○ 공제한도 : - (안도걸의원안) <table><tr><td>간접투자</td><td>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td></tr><tr><td>직접투자</td><td>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td></tr></table> <삭 제>(안도걸의원안)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2030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간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	직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간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																												
직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이재관의원안 2025. 4. 18. 발의(의안번호 9946),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6건의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그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와 더불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6조는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⁸²⁾이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 등’⁸³⁾(이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30%에서 100%⁸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이하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8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3)~(8) (생략)
 -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서 생략)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83)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 경우도 해당함(「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84)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

그 출자·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11년 이전까지는 투자 방식에 관계없이 10%로 동일하였으나, 이후 직접투자⁸⁵⁾(이른바 ‘엔젤투자’⁸⁶⁾)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는 직접투자는 출자·투자금액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의 공제율이, 간접투자⁸⁷⁾는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연혁]

구 분		~2011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공제율 (제16조)	직접투자	10%	20%	30%	30%/50%	30%/50%/100%	30%/70%/100%
	간접투자	10%					
공제 한도 (제 16조)		종합소득금 액의 30%	종 합소득금액의 40%		종 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 132조의2)		직접투자·간접투자 모두 적용			간접 투자만 적용		

8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86)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는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며, 엔젤투자는 투자한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단시간에 밑천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투자 방식임.

87)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1,075억원에서 2024년에는 1,86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2,11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금액	1,075	1,785	1,905	1,861	2,027	2,116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먼저, 이재관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의 소득공제율을 20%p 상향(10% → 30%) 하고,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지역에 따라,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 공제율 10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하고, ②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 10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각각 차등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천하람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의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10% → 20%)하고,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구간을 변경하여, 공제율 100%를 적용받는 구간을 현행 “3,000만원 이하분”에서 “5,000만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에서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분”에서 “1억원 초과분”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안도결의원안은 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의 소득공제율 구간을 나누어, 2억원 이하의 경우 5%p 상향(10% → 15%)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행 유지하며, ②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구간을 변경하여, 공제율 100%를 적용받는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이하분”에서 “5천만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에서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분”에서 “1억원 초과분”으로 각각 확대하며, ③ 간접투자의 공제한도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변경하고, ④ 법 제132조의²⁸⁸⁾에

88)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014. 1. 1.>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삭제 <2014. 1. 1.>
 - 나. 삭제 <2014. 1. 1.>
 - 다. 삭제 <2014. 1. 1.>
 - 라. 삭제 <2014. 1. 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서 벤처기업 간접투자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5건의 개정안은 모두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재관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은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각각 연장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벤처투자조합의 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2019년 170개, 4.24조원에서 2021년 404개, 9.54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기준 조합 수는 286개, 조성금액은 5.75조원 수준으로 2021년을 고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수 및 조합 결성금액]

(단위: 개,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수	170	206	404	380	290	286
결성금액	42,485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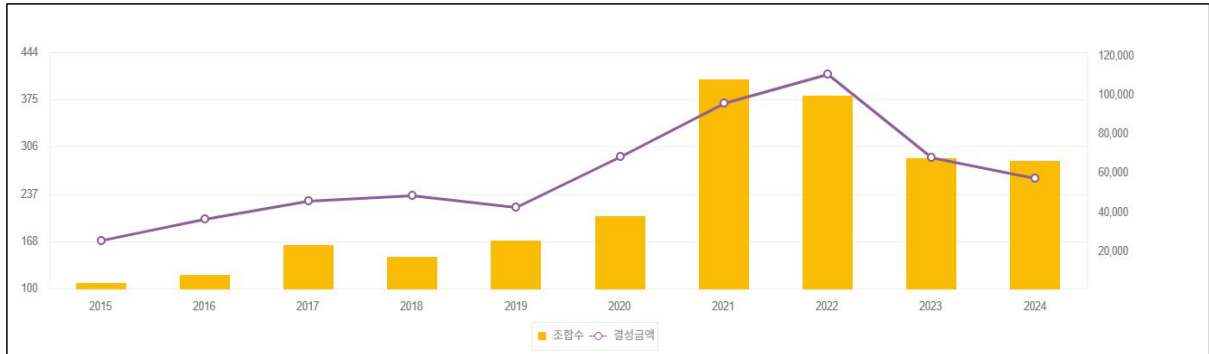
8. 삭제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e-나라지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투자 수익률 상승에 따라 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⁸⁹⁾

둘째,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안도결의원안의 경우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등 여러 차례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이와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셋째, 이재관의원안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해 더 유리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구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벤처 기업수는 38,216개사로 그 중 수도권(서울, 경기,

89) 특히 OECD 16개국의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패널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사회적 수익률이 공공 R&D나 일반 사업체(business)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대학이나 기업으로부터 양산된 지식의 흡수율을 제고하는 등 경제에 동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The economic impact of venture capital, Annaleena Parhankangas”

인천)이 65.3%인 24,974개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⁹⁰⁾으로 확인
됨.

[지역별 벤처기업 수]

(단위: 명)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0,905	1,637	476	1,200	1,336	685	703	1,508	1,282	12,278	1,791	701	936	887	1,385	289	217	38,216

자료: 벤처기업 현황자료(기준일: 2025. 9. 30),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비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자에 대해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게 되므로,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벤처기업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가 주로 고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향상은 실효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음⁹¹⁾.

둘째,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17년 이후 사실상 동일하나, 신규 투자금액의 경우 2021년 7.6조원을 기록한 이후 일

90) 벤처기업 현황자료(기준일: 2025. 9. 30),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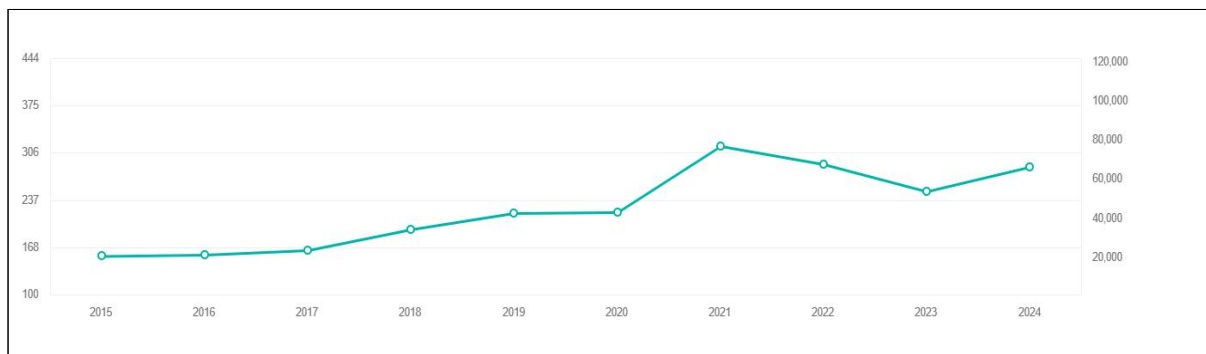
91) 현 제도는 현재도 이들의 절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고소득자들의 재테크…벤처투자하면서 절세 노린다” 조선비즈, 2023.1.5.)

부 감소하다가 2024년 6.6조원을 회복하였음. 추가적인 제도변경 없이도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효과가 현재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벤처기업 투자 및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은 추가적인 유인 제공 필요성 유무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도 최근 수년간 조세지출 규모가 2배 이상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 효과는 현재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임.⁹²⁾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 금액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 투자금	42,777	43,045	76,082	67,640	53,977	66,315



자료: e-나라지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한, 정부는 간접투자의 경우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낮을 수 있어,⁹³⁾ 현행 공제율 수준이 적정하며, 직접투자의 경우

92)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억원): ('20) 891, ('21) 1,075, ('22) 1,785, ('23) 1,905, ('24) 1,861, ('25e) 2,027, ('26e) 2,116

93) 「벤처투자법」 제51조 등에 따라 벤처 펀드 투자금(간접투자) 중 벤처기업에 유입되는 자금의 비율이 40%수준에 그칠 수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 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소액 투자자가 많아 공제구간 조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임.

□ 또한 이재관의원안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역 전용 벤처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공급⁹⁴⁾하고, 지역 유망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재정 투입을 통한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에서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⁹⁵⁾ 역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산업군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할 수 있는 점⁹⁶⁾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경우, 소득세는 연 평균 1,8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⁹⁷⁾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94)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2024.5.13.

9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
전기업을 위한 과세 특례(조특법 §121의33, §121의34) 등

96) 소프트웨어형에 속하는 정보통신업형 벤처기업은 제조업형 벤처기업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게 나타
나고, 4차 기업의 입지적 패턴 역시 대도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입지 특성”, 박종화

97)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는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만 추계한 것임(공제율 인
상에 따른 세수효과 제외)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이재관의원안	△1,895	△1,895	△1,895	-	-	△5,685	△1,895
천하람의원안	△1,895	△1,895	△1,895	-	-	△5,685	△1,895
윤준병의원안	△1,895	△1,895	△1,895	△1,895	△1,895	△9,475	△1,895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6,348억원(연평균 2,116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2,116	△2,116	△2,116	△6,348	△2,116

문 의 처

02)6788-5149

14.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의원안, 황정아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8조의3) ○ 감면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u>5년 이상</u>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 ○ 감면기한 및 감면율: <u>10년간 50%</u> ○ 원천징수비율: 5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 감면특례기준 완화, 감면기간 확대,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u>3년 이상</u> 근무한 자(황정아의의원안) ○ (현행과 같음) ○ <u>20년간 75%</u>(황정아의의원안) ○ <u>10년간 50%, 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70%</u>(정준호의원안) ○ 원천징수비율: - <u>25%</u>(황정아의의원안) - <u>50%, 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30%</u>(정준호의원안) ○ 적용기한: <u>2027. 12. 31.</u> (김주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의원안, 황정아의의원안, 정준호의원안) ○ 시행일: 2026.1.1.(김주영의원안)

* 김주영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068),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이인선의의원안 2025. 5. 7. 발의(의안번호 10385), 황정아의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95), 추경호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0), 정준호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84),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8건의 개정안은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먼저, 황정아의원안은 감면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며,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며, 소득세의 원천징수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준호의원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①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②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8건의 개정안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주영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준호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국인 우수인력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의미함.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24억원이며, 2026년에는 9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전망)	2026년(전망)
감면액	15	24	92	9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계 각국이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⁹⁸⁾ 중인 가운데 내국인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은 증가하는 반면⁹⁹⁾,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저조¹⁰⁰⁾하여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98) 주요국 대표 해외인력 유치·네트워크 사업

독일 훔볼트재단 (해외 포닥·중견·리더)	일본학술진흥회 (해외 포닥·중견·리더)	중국 천인계획 (해외 포닥·중견·리더)	영국 뉴턴 국제 Fellowship (해외포닥 유치)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 전세계 2만9천여명 동문 회원 보유 (노벨상 수상자 50명)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 단기(7일~12개월) 프로그램 다수 운영	- (포닥) 인당 1.7억원 ~2.2억원/년 지원 - 주거지원, 자녀학교 지원, 배우자 일자리 제공 등	- 인당 7~8천만원/년 지원 - 연구종료 후 10년까지 매년 £6,000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안)”, 2019. 2, p. 1.

99)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인력들이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 움직이는 이동 흐름이 뚜렷하며,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우수한 한인 인재들은 미국에 대부분 체류하거나,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한정된 이동을 보인다고 분석 (자료: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p. 96)

100) 전체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자의 졸업 후 미국 체류계획이 있는 비중은 2013년 59.1%, 2014년 60.7%, 2015년 62.9%, 2016년 66.7%, 2017년 68.5%, 2018년 63.6%임. (자료: NSF, Survey of Earned Doctorates)

둘째,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에 대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행 중이므로,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준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외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결정에는 세제상의 유인 외에도 연구 환경, 개인의 직업적 성취 및 향후 경로, 기타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만을 통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¹⁰¹⁾, 특정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세후소득과 해당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 사이에는 특별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조세특례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치’와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국내 복귀 결정유인, 장애 요소 및 복귀 결정 과정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내에 거주·취업 중인 내국인 우수 인력과의 세제지원의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해외유

1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1. 9.

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음.

셋째, 황정아의원안은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의 근무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고, 감면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변경하며, 소득세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등 소득세 감면 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력이 짧은 신진연구자에 대해서까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¹⁰²⁾, 국내 연구자와의 과세 형평성 저해, 국내연구 생태계의 훼손 우려¹⁰³⁾, 수혜 취득을 주요 목적으로 한 특례요건의 형식적 구비 등 도덕적 해이 리스크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넷째, 정준호의원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정부+민간) 총 R&D 금액 119조 740억원의 70.2%인 83억 5,724억원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연구원도 40만 4,138명으로 전국(60만 3,566명)의 66.9%로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상황임. 따라

102)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박사후과정생 학술연구지원사업,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신진·경력연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5년 또는 7년임

103) 국내 학계수준보다 열위에 있는 외국대학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우대받게 되는 문제, 국내 대학원 진학 대신 해외 학위취득후 국내복귀를 시도하는 문제 등 발생 가능.

서 정준호의원안과 같이 지역 연구기관으로 복귀하는 연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가산하여 부과한다면 우수인력의 국내유치에 대한 유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 R&D 역량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경기	459,348	470,451	519,571	577,028	610,981
서울	134,449	144,320	162,043	176,885	188,712
대전	77,059	88,737	94,428	103,791	110,852
충남	34,752	36,213	36,330	41,164	49,794
경북	28,095	26,871	27,751	31,953	38,412
인천	28,459	29,366	32,270	36,029	36,031
경남	31,895	30,898	34,080	32,555	33,415
충북	16,595	19,217	21,307	24,874	24,259
부산	15,817	16,968	17,627	20,377	20,024
대구	13,360	13,641	14,876	15,784	15,891
전북	11,217	12,361	14,112	14,756	14,757
광주	8,269	9,539	11,089	11,293	11,016
울산	11,100	10,672	11,900	13,079	9,747
전남	7,238	7,041	8,143	9,464	8,977
강원	5,172	5,551	6,859	7,635	7,945
세종	5,941	6,115	6,534	7,513	7,450
제주	1,744	2,316	2,433	2,278	2,477
합계	890,471	930,717	1,021,352	1,126,460	1,190,740

자료: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2025.2.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근 5년간 지역별 연구원 수 현황(2019~2023)]

(단위: 명)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비중 (%)
서울	132,997	139,511	151,361	156,269	158,706	26.29
부산	16,507	17,305	17,386	17,736	17,192	2.85
대구	14,047	14,498	14,856	14,455	14,453	2.39
인천	21,685	21,917	23,150	22,792	22,179	3.67
광주	9,471	9,967	9,392	8,917	8,944	1.48
대전	37,357	35,691	38,009	38,417	40,024	6.63
울산	8,025	7,900	7,948	8,161	8,362	1.39
세종	4,199	4,741	4,979	5,028	5,359	0.89
경기	195,972	205,899	215,116	223,612	223,253	36.99
강원	7,084	7,268	7,938	7,041	6,898	1.14
충북	13,318	14,137	15,274	16,339	15,481	2.56
충남	18,384	18,508	19,238	19,101	20,838	3.45
전북	9,207	10,032	10,682	11,216	10,941	1.81
전남	5,532	5,769	6,055	6,606	6,464	1.07
경북	19,535	19,189	19,891	20,555	20,274	3.36
경남	22,807	23,396	22,888	22,840	22,310	3.7
제주	2,009	2,241	2,323	2,445	2,340	0.39
합계	538,136	558,045	586,666	601,530	603,566	100

자료: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2025.2.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다만, 복귀예정자가 국내 복귀지역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해외거주 인력이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과정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국내복귀를 결정한 연구인력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 중 복귀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유인보다는 오히려 복귀장소를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직책·권한 및 연구 자율성, 테뉴어 취득 여부 등 경력 경로, 연구비·동료집단 등 연구 환경, 교

육·문화·의료 등의 거주 여건 등과 같은 변수가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세는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권이 미치는 전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도권외의 저소득 연구자는 과세되고, 비수도권의 고소득 연구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주영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7. 12. 31.로 2년간,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 12. 31.로 3년간,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의원안, 황정아의의원안 및 정준호의원안은 2030. 12. 31.로 5년간 연장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연 평균 10억원(김주영의원안)에서 최대 62억원(황정아의의원안)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김주영 의원안	△56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56	△112	△10
윤준병 의원안	△56	△112	△168	△223	△279	△279	△279	△279	△279	△279	△223	△279	△20
이인선 의원안	△56	△112	△168	△223	△279	△279	△279	△279	△279	△279	△223	△279	△20
황정아 의원안	△251	△335	△419	△503	△642	△688	△754	△810	△865	△922	-	△620	△62
서영교 의원안	△184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184	△368	△335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85억원(연평균 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정부안	△95	△95	△95	△285	△95

문 의 처

02)6788-5149